

안동권씨 부정공파 종중 전래 15세기 고문서 고찰

박성호*

1. 머리말
2. 부정공파의 계보와 조선 초기 문서의 형성
3. 새로 발견된 15세기 고문서의 분석 및 의의
4. 맺음말

요약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기탁 관리 중인 안동권씨 부정공파 종중 고문서 가운데서 15세기에 작성된 원본 고문서가 몇 점 확인되었다. 한국국학진흥원의 활발한 자료 수집 활동의 결과 안동권씨 부정공파 종중에 전래된 고서, 고문서, 목판 등 육백여 점이 확인되었고, 필자는 고문서 가운데서 이제까지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15세기 고문서 5점을 발견하였다.

이번에 확인한 15세기 고문서는 1449년(세종 31) 권징^{權徵} 문과 초시 시권 1점, 1454년(단종 2) 권가후^{權可後} 조사문서 1점, 1457년(세조 3) 권징 조사문서 2점, 1498년(연산군 4) 권갑성^{權甲成} 고신^{告身} 1점이다.

* 朴成鎬, 한국학중앙연구원 부교수

이 논문에서는 이들 고문서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과 고문서학적 의의를 따져보았다. 요컨대, 1449년(세종 31)의 시권은 권징이 문과 초시에 제출한 시권을 토대로 역서易書 제도에 따라 서리가 베껴 적은 주초朱草로 추정하였다. 또한 권가후와 권징에게 발급된 조사문서 3점은 자료의 희소적 가치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확인된 다른 원본 조사문서와 더불어 15세기 인사문서의 제도와 문서 양식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는 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권갑성에게 발급된 고신은 조선 개국 이후 『경국대전』 체제가 정착된 초기의 문서 제도를 살펴볼 수 있는 사례이다.

주제어

: 조선초, 시권試券, 조사문서朝謝文書, 오품이하 고신告身, 권가후權可後, 권징權徵, 권갑성權甲成

1. 머리말

필자는 최근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된 안동권씨 부정공파 종종 고문서 가운데서 15세기에 작성된 원본 고문서 몇 점을 확인하였다.¹ 안동권씨 부정공파는 시조 권행權幸의 10세손 부정 권통의權通義를 파조로 하여 세계를 이어온 가문으로서 안동시 와룡면 가야리(늪실)에 종가가 있다.

한국국학진흥원의 활발한 자료 수집 활동의 결과 국내 여러 종가와 종종 등에 전래된 고문서가 대량으로 기탁되었고, 그 가운데 안동권씨 부정공파 종종 명의로 기탁된 자료도 고서, 고문서, 목판 등을 합쳐

1 한국국학진흥원은 “소장자료 검색” 사이트(<https://search.koreastudy.or.kr>)를 통해 기관에서 조사 수집한 자료의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6백여 점에 이른다.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공개하고 있는 안동권씨 부정공파 종중 고문서 가운데서 이제까지 학술적으로 조명되지 않은 15세기 고문서 5점이 포함되어 있어 본고에서는 우선 이들 고문서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과 고문서학적 의의를 따져보고자 한다.

이번에 확인된 15세기 고문서는 1449년(세종 31) 권징權徵 문과 초시 시권 1점, 1454년(단종 2) 권가후權可後에게 발급된 조사문서朝謝文書² 1점, 1457년(세조 3) 권징에게 발급된 조사문서 2점, 1498년(연산군 4) 권갑성權甲成에게 발급된 고신告身 1점이다. 시권은 조선시대 과거제도의 산물이고, 조사문서와 고신은 조선시대 관원 임명제도의 산물로서 해당 제도가 시행된 조선 초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학술적으로 주목된다.

과거제도科擧制度에 관한 제도사적 연구는 이제까지 활발히 진행되어 고려 및 조선시대 과거제도에 대한 전체상과 세부적인 시행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저가 축적되어 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 과거 고시장에서 작성한 과거 답안지인 시권試券에 대한 연구도 전공자들에 의해 면밀히 수행되었다.³ 그런데 실물 시권을 토대로 한 지금까지 연구에서도 15세기에 작성된 시권은 거론되지 않았으므로 안동권씨 부정공파 종중에 전래된 시권의 자료적 가치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조사문서와 고신에 대해서는 고문서 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

2 문서의 명칭은 연구자에 따라 ‘朝謝牒’, ‘謝牒’ 등으로 지칭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제까지 발견된 조사문서 전체를 조명한 선행 연구와 故牒, 下帖, 平牒 등 다양한 문서 양식이 혼재된 특성을 감안하여 ‘朝謝文書’로 통칭한다.

3 박현순, 「조선 후기 試券에 대한 고찰」, 『고문서연구』 41(한국고문서학회, 2012); 김동석, 「과거 관련 장전장후 고문서 연구」, 『대동한문학』 40(대동한문학회, 2014); 김동석, 『조선시대 선비의 과거와 시권』(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1).

가 이루어져왔다. 조선 개국 후 『경국대전』 체제가 확립되면서 사품이상의 고위 관료에게는 국왕 명의로 발급하는 교지敎旨 양식의 고신을 발급하고, 오품이하의 관료에게는 이조와 병조가 국왕의 명을 위임받아 관서의 명의로 고신을 발급하게 되었다. 『경국대전』에서는 이를 각각 ‘무문관사품이상고신’과 ‘문무관오품이하고신’으로 지칭하였다.⁴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수만 점 이상으로 추산되는 조선시대 고신에 대한 기초적인 고문서학적 연구가 수행되어 고신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깊어진 상황이다.⁵ 그런데 조사문서에 대해서는 문서의 명칭 및 성격에 대한 학술적 논쟁이 한동안 지속되다가 최근에는 고려후기로부터 조선초 『경국대전』 체제의 오품이하고신 제도가 확립되기 전까지 운용된 관직 임명문서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⁶

이상의 조선시대 시권, 조사문서, 고신에 대한 제도사적, 고문서학적

4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 및 ‘文武官五品以下告身式’ 참조.

5 심영환, 「朝鮮時代 草書告身 研究」, 『고문서연구』 24(한국고문서학회, 2004);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관련 敎旨의 문서형식」, 『고문서연구』 30(한국고문서학회, 2007); 川西裕也, 「朝鮮初期における官敎文書様式の変遷 — 頭辭と印章を中心として」, 『朝鮮學報』 205(조선학회, 2007); 박성호, 『고려말 조선초 왕명문서 연구』(한국학술정보, 2017).

6 박재우, 「15세기 인사문서의 양식 변화와 성격」, 『역사와 현실』 59(한국역사연구회, 2006); 박준호, 「고려후기와 조선초기의 인사 문서 연구」, 『고문서연구』 31(한국고문서학회, 2007); 김형수, 「고려후기 이자수 관직임용자료 4건」, 『국학연구』 12(한국국학진흥원, 2008); 矢木毅, 『高麗官僚制度研究』(京都大学学術出版会, 2008); 박준호, 『예의 패턴 — 조선시대 문서행정의 역사』(소와당, 2009); 川西裕也, 「『이재난고』 신축일력 소재 여말선초 고문서에 대하여」, 『고문서연구』 36(한국고문서학회, 2010); 심영환·박성호·노인환, 『변화와 정착 — 여말선초의 조사문서』(민속원, 2011); 박성중, 「조사의 사용 의미와 문서식」, 『고문서연구』 42(한국고문서학회, 2013); 박재우, 「고려후기 인사행정과 인사문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사연구』 162(한국사연구회, 2013); 박성호, 「새로 발견된 김한계, 배임 조사문서와 조선초기 오품이하 고신의 변천」, 『국학연구』 32(한국국학진흥원,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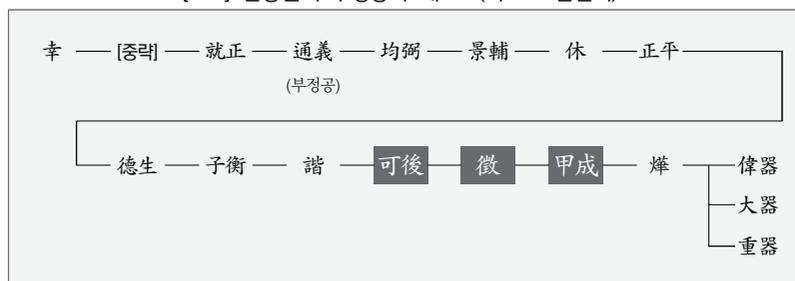
연구 동향을 바탕으로 이번에 새로 확인된 안동권씨 부정공파 종중의 15세기 고문서에 대한 기초적 원문 분석, 제도 및 고문서학적 의의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2. 부정공파의 계보와 조선 초기 문서의 형성

안동권씨는 고창(안동의 옛 명칭)에서 건훤 세력에 맞서 고려 건국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신에 녹훈된 권행權幸을 시조로 세계를 이은 성씨이다. 원래 신라 왕실의 후예인 김씨였으나, 고려 건국의 공로를 인정받아 왕으로부터 권씨 성을 하사받았다.

태사공 권행으로부터 비롯된 안동권씨 계보 가운데 부정공 권통의를 기점으로 후대에 부정공파가 형성되었다.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가야리에 종가가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고, 이 가계의 계보를 간략히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도 1] 안동권씨 부정공파 계보도(시조~조선전기)⁷



7 『安東權氏族譜』(成化譜, 1476) 및 『安東權氏副正公派世譜』(1861) 참조.

안동권씨 부정공파 종종 고문서 가운데 이번에 확인된 15세기 문서는 부정공 권통의로부터 9세를 내려간 권가후와 그의 아들 권징 및 손자 권갑성 대에 생성된 것이다.

권가후의 생몰년은 미상이다. 사정(司正) 벼슬을 지냈으며, 묘는 경상도 풍기 태장(臺庄)에 있다고 족보에 기재되어 있다.

권징(1426~1467)은 1447년(세종 29) 생원시에 합격한 다음 1450년(문종 즉위) 식년시 문과에 급제했고, 1455년(세조 1)에는 좌익원종공신에 녹훈되었다.⁸ 관직은 승문원 부정자·사헌부 지평 등을 역임하였고, 1467년(세조 13) 함길도 병마평사로 있을 때 발생한 이시애의 난 때 절명하였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권인호(權仁濩) 등 후손들이 중심이 되어 행적과 집안에 전해진 일부 글을 모아 『등암선생일고(藤巖先生逸稿)』를 간행하여 지금까지 목판과 문집이 전해지고 있다.⁹

권갑성은 생몰년을 비롯하여 자세한 행적이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족보에는 충순위(忠順衛)였다는 사실과 묘의 위치 정도만 기재되어 있다. 충순위는 세종 대에 마련된 제도에 따라 3품 이상 고관 자손들의 관로를 마련해 주기 위해 고안된 병종의 하나였다.¹⁰

8 세조의 등극에 기여한 좌익공신과 좌익원종공신은 1455년(세조 1)에 녹훈되었다. 제도에 따라 원종공신에게는 녹권이 발급되었는데, 당시 권징이 받은 『좌익원종공신 녹권』은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녹권은 갑인자 활자본으로서 당시에 발급된 원본이고, 만송문고(청구기호: 만송貴126A) 자료 가운데 하나로서 만송 김완섭 변호사에 의해 수집된 것으로 추정된다. 녹권에 찍힌 '必有齋印'이라는 장서인을 통해서도 원소장처가 안동권씨 부정공파 종가였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9 1828년(순조 28) 간행, 2권 1책 목판본, 권1에는 詩(1), 書(1), 說(1), 策(2), 序(2), 권2에는 부록으로 行狀, 世系紋, 墓表, 墓碣銘, 奉安告辭, 奉安祝文, 贊死節詩, 跋이 수록되어 있다. 1814년(갑술) 李周禎과 1826년(병술) 李仁行의 서문, 1828년(무자) 尹魯東과 安光直의 발문이 있다.

10 『세종실록』 27년(1445) 7월 19일 기사. (이 논문에서 인용하는 실록 기사의 원문

이상에서 약술한 권가후, 권징, 권갑성은 조선 개국 초기인 14~15세기에 실존한 인물이다. 이들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후대에 편찬된 족보와 문과 급제 후 관직 생활을 한 권징에 대한 단편적인 기록 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고문서의 자료적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면서 종가, 종중, 개인 소장자 등에게 전해진 고문서 가운데서 새로운 자료가 속속 발견되어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빈 공간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다.

권가후의 경우 선행 연구에서는 명확히 성명을 지목하지 못했지만, <모인 추증첩某人追贈牒>으로 명명된 문서가 이미 소개되었다가¹¹ 최근 조선시대 추증문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 추증첩이 권가후에게 발급된 사실이 밝혀졌다.¹² 이번에 새롭게 1454년(단종 2)에 권가후를 행섭사용行攝司勇에 임명하는 조사문서가 종중 소장 문서 가운데서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권가후가 생존해 있을 당시에 발급된 고문서는 지금까지 2점이 확인되었다.

권징의 경우는 문과 급제 후 경외관직을 역임했으므로 『단종실록』과 『세조실록』에서도 일곱 건의 기사가 확인된다. 그리고 2011년에 발간된 연구서를 통해 당시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고려 말과 조선 초에 한시적으로 존재했던 관직 임명문서의 하나인 조사문서 47점 가운데 권징에게 발급된 원본 문서 7점이 이미 소개된 바 있다.¹³ 그러나 당시에 소개된

또는 국역문은 모두 국사편찬위원회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조선왕조실록』을 이용하였음.)

11 심영환, 「조선초 吉再의 추증과 <追贈牒>의 復元」, 『포은학연구』 7(포은학회, 2011, 49~50쪽.

12 권유정, 「조선시대 추증 제도와 문서 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19), 30쪽.

조사문서 7점은 안동권씨 부정공파에 전래된 것이 아니라, 안동에 세거한 흥해배씨 임연재 종가의 조선전기 고문서 가운데 포함된 것이었다.¹⁴ 이 외에도 임연재 종가 소장 고문서 가운데서 권징의 생원 입격 백패와 문과 급제 흥패도 확인되어 학계에 소개되었다.¹⁵

권갑성은 과거 합격이나 관직에 나아간 이력이 없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애 전반에 관한 별다른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충순위 신분으로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서 품계가 올랐고, 국가로부터 그에 맞는 대우를 받았다. 이번에 확인된 문서에는 충순위 권갑성이 종7품 분순부위(奮順副尉)에서 종6품 병절교위(秉節校尉)로 승품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고려가 역사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왕조 조선이 개국한 초기를 살았던 권가후, 권징, 권갑생 삼대의 존재는 육백여 년의 시간 속에 안동권씨 가문의 족보와 후손들의 전승 가운데서만 일부 흔적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들이 숨 쉬고 살았던 당시에 이들로 인해 생성됐던 원본 문서는 족보나 문집 등에 수록된 후대에 정리된 기록과는 달리 해당 인물의 실존성을 현재에 생생하게 전해준다.

13 심영환·박성호·노인환, 『변화와 정착 여말선초의 조사문서』(민속원, 2011).

14 안동 흥해배씨 임연재 종가에 전래된 다량의 고문서는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다. 이 기탁 고문서의 절대 다수는 조선 중후기에 생성된 것이다. 원래 임연재 종가에는 고려 말로부터 조선 전기에 생성된 고문서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20세기 후반에 원소장처에서 유출된 이후 현재까지 명확한 소장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선행 연구를 통해 알려진 권징에게 발급된 백패, 흥패, 조사문서는 모두 2000년대 이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고문서 조사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다.

15 박성호, 『고려말 조선초 왕명문서 연구』(한국학술정보, 2017), 296쪽.

3. 새로 발견된 15세기 고문서의 분석 및 의의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안동권씨 부정공파 종중에 전래된 15세기 고문서 5점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한다.

1) 1449년(세종 31) 권징 문과 초시 시권

조선은 고려의 과거제도를 계승하여 조선의 과거제도를 확립하였다. 조선의 과거科擧는 법전에 근거하여 크게 문과, 생원·진사시, 무과, 잡과로 구분할 수 있다.¹⁶ 이 가운데서 양반들은 생원·진사시와 문과를 선망했기 때문에 생원·진사시와 문과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된 제술 시험 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최근의 조선시대 시권에 대한 연구 성과에 따르면, 조선시대 각종 제술 시험에 제출된 시권試券은 적어도 1천여 점 이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⁷ 작성 연도는 16세기로부터 19세기 후반 사이에 분포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가장 이른 시기에 작성된 시권의 실물은 1507년(중종 2) 권벌權撥(1478~1548)이 증광시 문과의 최종 단계인 전시殿試에 제출한 대책對策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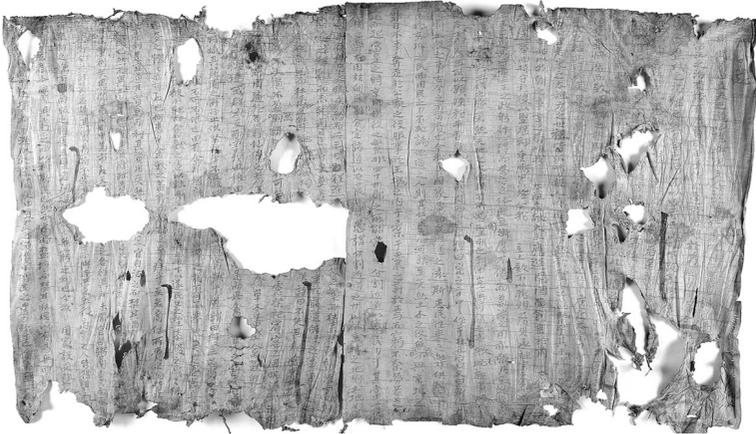
그런데 이번에 안동권씨 부정공파 종중 고문서에서 확인된 시권은 1449년(세종 31)에 실시된 이듬해 경오 식년시의 초시初試 시권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에 시행된 식년시는 전년도 가을에 초시를 치르고, 이듬해 봄에 생원·진사시의 경우 복시를, 문과의 경우 회시와 전시를 치렀다.

안동권씨 부정공파 종중에서 발견된 아래의 시권을 권징의 문과

16 『경국대전』 「예전」, 「諸科」 참조.

17 김동석, 『朝鮮時代 試券 研究』(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3), 6쪽.

초시 시권으로 추정하는 유력한 근거는 앞서 언급한 『등암선생일고』의 권1에 수록된 ‘책策-관시館試’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¹⁸ 관시는 조선시대 문과의 초시 가운데 성균관에서 치른 경우를 지칭한 용어였다.¹⁹ 이미 1447년(세종 29)에 생원으로 합격한 권징이 성균관 유생 자격으로 문과 초시를 치른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후기에 권징의 문집을 편찬할 때 당시까지 종가에 전래된 권징의 문과 초시 시권을 토대로 그 내용을 문집에 그대로 수록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 1] 1449년 권징 문과 초시 시권의 주초朱草

18 『등암선생일고』에 수록된 관시 시권의 전문은 총 1,486자로 확인된다. 필자가 대조해 본 결과 이 시권은 사진을 통해 보는 바와 같이 중간중간 구멍이 뚫리는 등 손상된 부분도 있지만, 문집에 수록된 완결 상태를 기준으로 할 때 마지막 부분 173자 정도가 전체적으로 탈락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형태는 유지하고 있다.

19 조선시대 문과의 초시는 크게 성균관에서 치러진 관시(50인), 한성부에서 치러진 한성시(40인), 각 도에서 치러진 향시(경기 20인/충청도 25인/전라도 25인/경상도 30인/강원도 15인/평안도 15인/황해도 10인/영안도 10인)가 있었다(『경국대전』 예전, ‘제과’ 참조).

그런데 위 시권은 한 가지 더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 우선 외형상 군데군데 구멍이 나서 글자가 떨어져 나간 부분이 보인다. 그리고 글자의 색깔이 붉은 색이고, 곳곳에 검정색 먹으로 내리그은 흔적이 보인다. 지금까지 확인된 조선시대 시권의 절대 다수가 글자는 검정색이고, 중간에 인장이 찍혀 있거나 여백에 성적이 표기되어 있는 등의 특성을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위 시권이 보여주는 특성은 일반적인 시권과는 차이가 있다.

필자는 위 시권을 1449년(세종 31)에 권징이 제출한 문과 초시 시권의 주초(朱草)로 판단한다. 주초는 조선시대 과거제도에서 시행된 역서(易書)의 산물이다. 역서란 응거자의 필체를 시관이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고안된 방안이다. 응거자가 제출한 시권을 놓고 각 관서에서 차출된 서리(書吏)가 붉은 색 먹으로 내용을 온전히 베껴내면, 시관이 이 주초를 토대로 채점을 하는 제도였다. 앞의 [도 1]과 같이 주초의 원본이 확인된 사례는 아직까지 많지는 않지만, 선행 연구를 통해 몇 가지 사례가 확인된 바는 있다.²⁰

결론적으로 위 시권은 지금까지 알려진 여타 조선시대 시권보다 작성 시기가 50년 이상 앞서 작성된 것이고, 문과의 최종 단계인 전시에 제출된 시권은 아니지만 문과 초시에 제출된 시권의 주초로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2) 1454년(단종 2) 권가후 조사문서

2011년에 당시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조사문서의 현황을 종합한 연

20 김동석, 『조선시대 선비의 과거와 시권』(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1), 165~166쪽.

구 성과가 발간되었다.²¹ 당시 기준으로 총 47점의 조사문서가 확인되었는데 그 가운데 족보나 일기 등에 전사된 것이 9점, 원본문서가 38점이었다.

이후 2017년에 한국국학진흥원 기탁 자료 가운데 의성김씨 목사공파 종가와 흥해배씨 임연재 종가 고문서에서 김한계 조사문서 2점과 배임 조사문서 1점이 추가로 확인되었다.²² 따라서 최근까지 총 50점의 조사문서(사본 9점, 원본 41점)가 알려져 있었다.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권가후 조사문서 1점과 권징 조사문서 2점을 포함하면, 2022년 현재를 기준으로 고려 말과 조선 초에 발급된 조사문서는 총 53점(사본 9점, 원본 44점)이 된다.

이 가운데 원본 문서의 현황만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원본 조사문서 현황

연번	문서명	발급일	원소장처 (소장기관)
1	1402년 신사렴 조사문서	05.30.	아주신씨 호계 가문
2	1403년 신사렴 조사문서	02.06.	아주신씨 호계 가문
3	1403년 정전 조사문서	07.22.	초계정씨 동계 종가
4	1404년 정전 조사문서	09.17.	초계정씨 동계 종가
5	1407년 정전 조사문서	12.18.	초계정씨 동계 종가
6	1409년 심언충 조사문서	03.28.	단천 청송심씨
7	1413년 정전 조사문서	05.17.	초계정씨 동계 종가
8	1419년 배권 조사문서	06.18.	흥해배씨 임연재 종가
9	1420년 신사렴 조사문서	01.20.	아주신씨 호계 가문
10	1423년 이점 조사문서	08.04.	경주이씨 양월 문중
11	1428년 배권 조사문서	12.15.	흥해배씨 임연재 종가

21 심영환·노인환·박성호, 앞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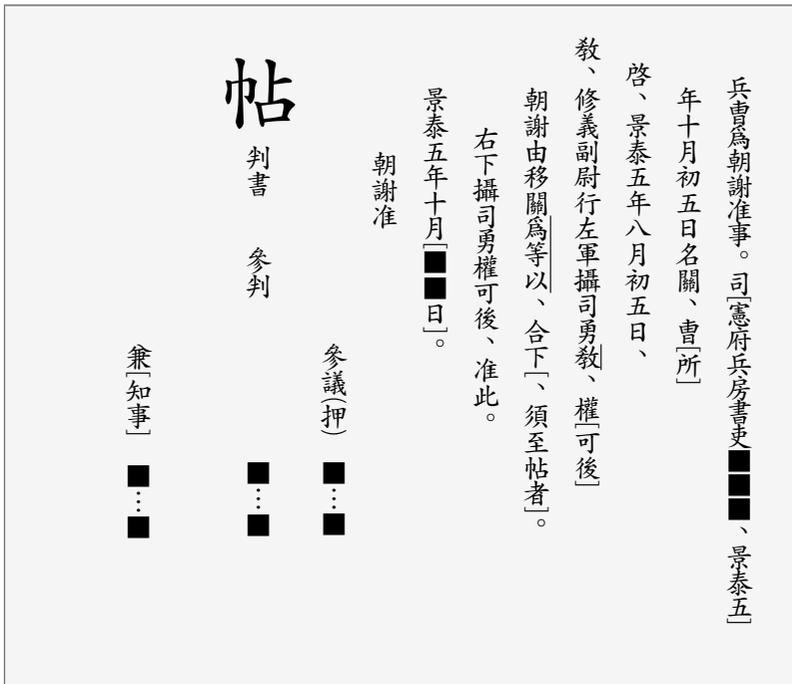
22 박성호, 「새로 발견된 김한계, 배임 조사문서와 조선초기 오품이하 고신의 변천」, 『국학연구』 32(한국국학진흥원, 2017).

연번	문서명	발급일	원소장처 (소장기관)
12	1434년 김세로 조사문서	07.07.	흥해배씨 임연재 종가
13	1440년 김세로 조사문서	09.26.	흥해배씨 임연재 종가
14	1444년 이접 조사문서	12.03.	경주이씨 양월 문중
15	1447년 김세로 조사문서	03.26.	흥해배씨 임연재 종가
16	1448년 김한계 조사문서	05.22.	의성김씨 목사공 종택 (한국국학진흥원)
17	1449년 김한계 조사문서	12.17.	의성김씨 목사공 종택 (한국국학진흥원)
18	1449년 배임 조사문서	09.03.	흥해배씨 임연재 종가
19	1450년 배임 조사문서	윤01.06.	흥해배씨 임연재 종가
20	1450년 권징 조사문서	12.10.	흥해배씨 임연재 종가
21	1451년 권징 조사문서	04.30.	흥해배씨 임연재 종가
22	1452년 권징 조사문서	07.22.	흥해배씨 임연재 종가
23	1452년 배임 조사문서	07.22.	흥해배씨 임연재 종가
24	1452년 배임 조사문서	11.18.	흥해배씨 임연재 종가
25	1452년 권징 조사문서	12.16.	흥해배씨 임연재 종가
26	1454년 권가후 조사문서	10.■■■.	안동권씨 부정공파 종중 (한국국학진흥원)
27	1454년 정옥견 조사문서	12.10.	초계정씨 동계 종가
28	1455년 김세로 조사문서	02.21.	흥해배씨 임연재 종가
29	1455년 배임 조사문서	10.08.	흥해배씨 임연재 종가
30	1456년 배임 조사문서	01.20.	흥해배씨 임연재 종가
31	1457년 권징 조사문서	09.01.	안동권씨 부정공파 종중 (한국국학진흥원)
32	1457년 권징 조사문서	09.01.	안동권씨 부정공파 종중 (한국국학진흥원)
33	1457년 배임 조사문서	11.04.	흥해배씨 임연재 종가 (한국국학진흥원)
34	1457년 배임 조사문서	11.04.	흥해배씨 임연재 종가
35	1458년 김세로 조사문서	05.09.	흥해배씨 임연재 종가
36	1458년 권징 조사문서	10.02.	흥해배씨 임연재 종가
37	1458년 배임 조사문서	11.23.	흥해배씨 임연재 종가
38	1461년 권징 조사문서	06.09.	흥해배씨 임연재 종가
39	1461년 권징 조사문서	06.12.	흥해배씨 임연재 종가
40	1462년 배임 조사문서	10.09.	흥해배씨 임연재 종가
41	1463년 배임 조사문서	05.■■■.	흥해배씨 임연재 종가
42	1463년 김세로 조사문서	윤07.03.	흥해배씨 임연재 종가
43	1464년 김세로 조사문서	10.■■■.	흥해배씨 임연재 종가
44	1465년 배임 조사문서	02.08.	흥해배씨 임연재 종가

앞의 <표 1>에서 보듯이 1454년(단종 2)에 권가후에게 발급된 조사문서는 1402년(태종 2)에 신사렴에게 발급된 조사문서로부터 유지되어 온 조선 초기 조사문서의 제도와 양식을 승계하는 시점에 발급된 것이다.

무반의 인사를 담당한 병조에서 당시 제도에 따라 오품이하 관원인 권가후를 “수의부위 행 좌군 섭사용”으로 삼기 위하여 국왕에게 보고한 인사안을 토대로 사헌부에 신원 조회를 공문으로 요청했고, 사헌부에서는 조회 결과 사헌부 관원 전원이 이상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통보 문서를 다시 병조로 보내오며 따라 병조에서 이 문서를 최종적으로 권가후에게 발급한 것이다.

[자료 1] 1454년 권가후 조사문서



※ [] 안의 내용은 필자가 복원한 것임(이하 동일). 도판은 [부록 1] 참조

선행 연구에서 이미 이 시기(1402~1456년) 조사문서의 구조를 아래와 같이 정리한 바 있고, [자료 1]은 이 유형에 완벽히 부합하는 문서 격식을 갖추고 있다.²³

- a. 吏曹[兵曹]爲朝謝准事
- b. 司憲府吏房[兵房]書吏某, 年號某年某月某日名關,
- c. (曹所申[啓],) 某年某月某日下批[判/教(除)], 某爲某職, 朝謝由,
- d. 移關爲等以,
- e. 合行故牒, 須至故牒者.[合下, 須至帖者.]

위의 ‘a’와 ‘e’는 이조吏曹 또는 병조兵曹가 문장의 주체가 되는 구문으로서 이조 또는 병조에서 문서 수취자에게 이번 인사 결과의 통보를 통보하고 있다.

‘b’는 사헌부의 서리가 이조 또는 병조로 모년 모월 모일에 관關이라는 공문서를 보내왔다는 관련 근거를 적는 구문이다.

‘c’는 사헌부의 공문에 적힌 내용의 요지를 발췌하여 적은 부분으로서 대체로 모년 모월 모일에 왕께 보고된 인사안에 대한 사헌부의 신원 조회가 이상 없이 끝났다(朝謝由)는 내용을 담고 있다.

‘d’는 사헌부에서 ‘c’의 내용을 담아 이조 또는 병조로 관關이라는 공문서를 보내왔다는 내용을 적은 부분이다. ‘b’와 호응하는 구문이다.

1454년(단종 2) 권가후에게 발급된 조사문서는 위와 같은 조사문서

23 심영환·노인환·박성호, 앞의 책, 72~74쪽.

의 구조를 온전하게 갖추고 있어 조선 초기 조사문서와 인사 제도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검증 자료가 된다. 아울러 권가후라는 실존 인물에 대한 당대 사료로서의 의미도 크다.

3) 1457년(세조 3) 권징 조사문서(2점)

1457년(세조 3)에 권징에게 발급된 조사문서 2점은 세조대에 단행된 공문서의 변화와 조사문서 작성법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세조대에는 고려시대로부터 사용해 온 이두吏讀가 병용된 공문서 작성법을 폐지하고, 명나라의 공문서 작성 방식인 이문吏文 문체를 수용하여 사용하자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이과吏科와 승음 출신承蔭出身의 작첩爵牒을 봉封하거나 증직贈職하는 따위의 문첩文牒에는 모두 이문吏文을 사용하는데, 오로지 동반東班·서반西班 5품 이하의 고신告身에서만 이두吏讀를 옛날 그대로 사용하니, 심히 비루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이문吏文을 사용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²⁴

결국 1457년(세조 3)에 이조에서 왕에게 아뢴 위의 건의는 그대로 실행되었다. 실록의 기사만으로는 그 실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앞서 언급한 1457년(세조 3) 11월 4일에 배임에게 발급된 조

24 『세조실록』 3년 7월 13일 2번째 기사, 吏曹啓. “吏科及承蔭出身封贈爵牒等項文牒, 皆用吏文, 獨於東西班五品以下告身, 襲用吏讀, 甚爲鄙俚. 請自今用吏文.” 從之.

사문서를 통해 종래까지 조사문서에서 사용되었던 이두가 모두 제거되고, 온전히 명나라 공문서투의 문장으로 변화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²⁵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권징에게 발급된 조사문서 2점은 위의 배임에게 발급된 문서보다 두 달 앞선 9월 1일에 발급된 것이다. 위 실록 기사가 1457년(세조 3) 7월 13일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임을 생각할 때 같은 해 9월 1일에 권징에게 발급된 조사문서는 당시 조정의 결정 사항이 초기부터 어떻게 시행되었는지를 다른 문서 사례와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검증 대상이 된다.

실제로 1457년(세조 3) 11월 4일 배임에게 발급된 조사문서를 비롯한 그 이후에 발급된 조사문서들과 9월 1일에 권징에게 발급된 조사 문서에는 다소 간의 차이가 관찰된다. 다시 말해, 1457년(세조 3) 7월 13일에 결정된 문서 작성 방식에 대한 변화가 시행 초기부터 확고부동한 격식을 갖추었는지, 아니면 다소 변화 과정을 거쳐 통일된 격식으로 자리 잡았는지를 권징에게 발급된 조사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1457년(세조 3) 7월 13일을 기점으로 이전의 조사문서와 9월 권징에게 발급된 조사문서, 11월 배임에게 발급된 조사문서를 비롯한 그 이후의 사례에 보이는 변화를 다음 <표 2>를 통해 간단히 비교해 보자.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1456년(세조 2)까지는 고려 말로부터 이어 온 이두를 혼용한 문서 작성법이 유지되었고, 1457년 9월 조사문서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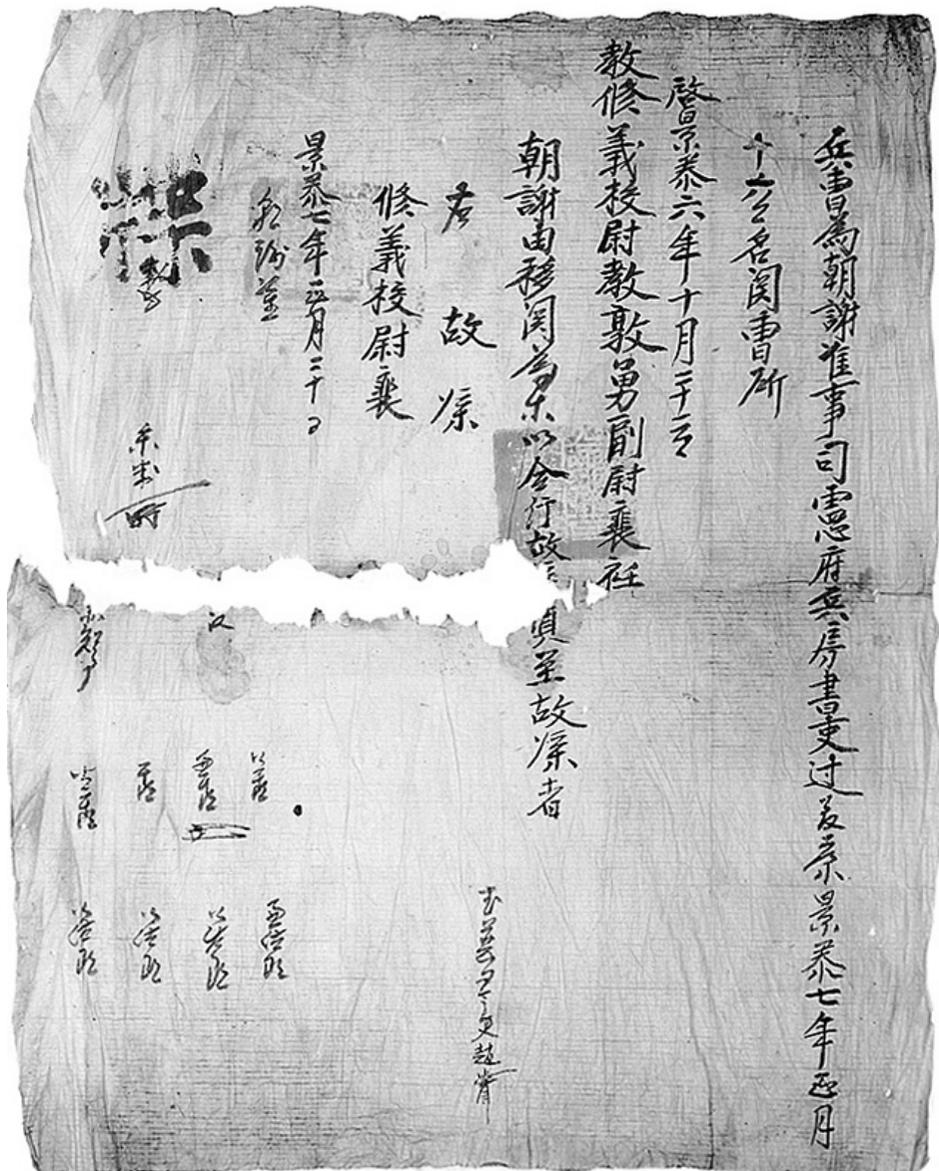
25 박성호, 앞의 논문, 2017, 62~63쪽.

11월 이후의 조사문서에는 이두가 사라지고 명나라 공문서투의 문서 작성법이 전면 적용되었다. 다만, 1457년 9월 조사문서와 11월 조사 문서 간에도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

〈표 2〉 1457년 전후 조사문서의 양식 비교

구분	1456년 '배임' 조사문서	1457년 9월 '권징' 조사문서	1457년 11월 '배임' 조사문서
도입부	某曹爲朝謝准事,	某曹爲告身事,	某曹爲告身事,
사헌부 관 접수	司憲府某房書吏某, 某年某月某日名關,	某年某月某日, 准司憲府(關該),	某年某月某日, 准司憲府關該,
국왕의 하비	曹所啓, 某年某月某日教, 某職某,	某年某月某日, 本曹啓准, 某職某,	某年某月某日批, 某爲某職,
서경 완료	朝謝由移關爲等以,	已經議署關,	已經議署關,
종결부 (6품 이상과 7품 이하를 기준으로 종결부의 투식이 달랐음)	[故牒] * 6품 이상 合行故牒, 須至故牒者. [下帖] * 7품 이하 合下, 須至帖者.	[미상] * 6품 이상 [下帖] * 7품 이하 請照驗, 准此, 合行下帖, 仰照驗施行, 須至帖者.	[牒] * 6품 이상 請照驗, 准此, 所據本官告身, 理宜出給, 爲此, 須至牒者. [下帖] * 7품 이하 請照驗, 准此, 合行下帖, 仰照驗施行, 須至帖者.
발급연월일	某年某月某日. 朝謝准	某年某月某日. 告身	某年某月某日. 告身

[도 2] 1456년 배임 조사문서 (이두가 혼용된 사례)



[자료 2] 1457년 권징 조사문서(1)

帖

判書

參判(押)

參議

行正郎

行佐郎

正郎

行佐郎(押)

吏[曹]爲告身事。天順元年捌月貳拾捌日、准司憲[府關該、本年]柒月初伍日、本曹啓准、兼承文院著作郎權徵、已經議署關、請照驗、准此、合行[下帖、仰照]驗施行、須至帖者。

右帖下兼承文院著作郎權徵、准此。

天順元年玖月初壹日。

告身

行正郎

行佐郎

文選司令史 朴[着名]

※ 도판은 [부록 2] 참조

[자료 3] 1457년 권징 조사문서(2)

帖
 判書 參判(押) 參議 行正郎 行佐郎
 正郎 行佐郎(押)

[吏曹爲告身事。天順元[年]捌月貳拾捌日、准[司憲府關該、本]年柒月初伍日、本曹
 [啓准、]知承文院著作郎權徵爲宣務郎行奉常寺錄事、已經議署[關、請]照驗、准此、合行下帖、仰照驗施行、須至帖者。
 右帖下行奉常寺錄事權徵、准此。
 [天]順元年玖月初壹日。
 告身
 文選司令史 [朴(着名)]
 行正郎 行佐郎

※ 도판은 [부록 2] 참조

앞의 1457년에 권징에게 발급된 조사문서 2점은 문서에 기재된 내용에서 확인되듯이 조선시대 고문서 가운데서 현재로서는 “고신(告身)”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가장 이른 사례이다. 조선초 실록 등에는 사품이상 고위 관료에게 발급한 관직 임명문서를 “관교(官敎)”, 오품이하 관료에게 발급한 임명문서를 “교첩(敎牒)” 또는 “직첩(職牒)”으로 표기한 사례는 있지만,²⁶ 명시적으로 고신으로 지칭한 경우는 없다. 그러나 『경국대전』이 완비되는 과정에서 고신이라는 용어가 수록됨으로써 조선시대 관료 임명문서는 제도적으로 문무관 사품이상 고신과 문무관 오품이하 고신으로 구분되게 되었다.

위 문서와 같이 1457년(세조 3)을 전후로 기존에 이두를 혼용하던 문서 작성 방식을 이문 작성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종래의 “조사준(朝辭准)”이라는 표기를 “고신(告身)”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고신이라는 용어는 1465년(세조 11)에 발급된 조사문서에까지 그 용례가 확인되고, 이후 특정 시기를 지나면서 문서의 본문에서는 더이상 직접 기재하지 않게 되었다.

문서 양식의 큰 틀에서 보면, 원과 명의 공문서 양식인 고첩(故牒), 첩(牒), 하첩(下帖) 등이 조사문서에 적용되면서 문서 수취자의 품계(6품 이상, 7품 이하) 등에 따라 구분되어 쓰였다. 그러나 이렇게 다소 번잡한 구별도 결국에는 『경국대전』의 문무관 오품이하 고신식으로 바뀌면서 대폭 간략해진 통일된 하나의 문서 양식으로 변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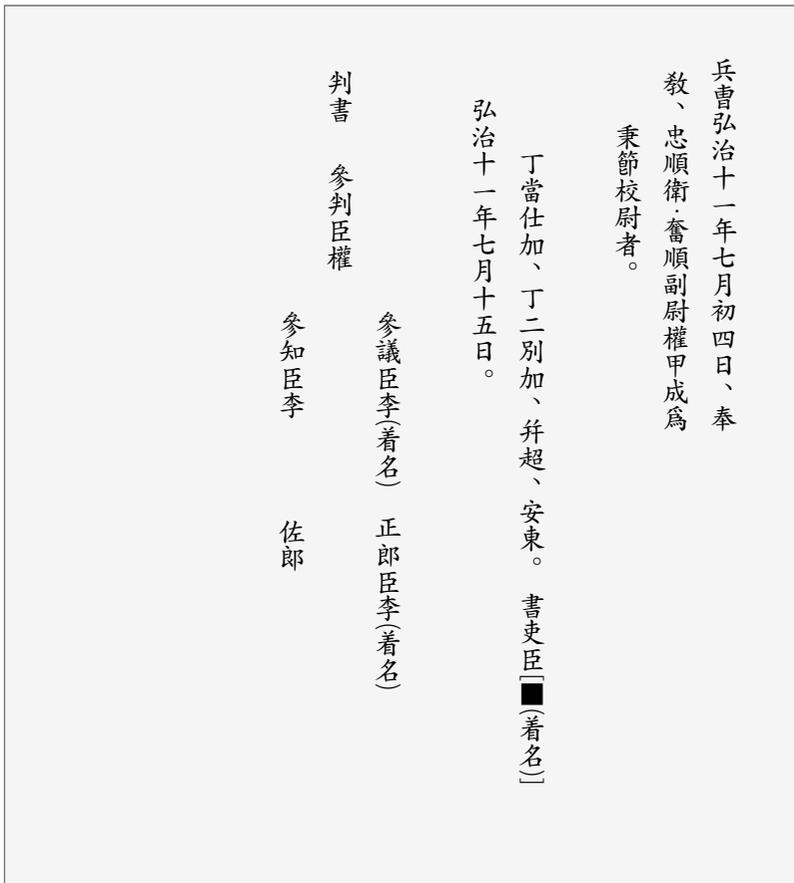
이번에 새로 발견된 1457년(세조 3) 권징에게 발급된 조사문서 2점은 15세기에 조사문서가 오품이하 고신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의 시점을 실제로 확인시켜 준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

26 『태조실록』 1년 10월 25일 1번째 기사, 改告身式. “一品至四品, 賜王旨曰官敎, 五品至九品, 門下府奉敎給牒曰敎牒.”

4) 1498년(연산군 4) 권갑성 고신

권정은 권갑성과 권을성 두 아들을 두었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권갑성은 정확한 생몰년도 알려져 있지 않았고, 관력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아래의 자료와 같이 조선에서 확립한 ‘문무관 오품이하 고신식’에 따라 발급된 고문서 한 점이 실물로 확인되었다.

[자료 4] 1498년 권갑성 고신



※ 도판은 [부록 4] 참조

조선은 개국 후 지속적으로 국가 제도를 정비해 나갔고, 성종대에 이르러 『경국대전』을 반포함으로써 기본적인 국가 제도를 완비하였다. 『경국대전』은 세조대로부터 성종대에 이르기까지 몇 차례 반포되었다가 미비점을 보완하여 최종적으로는 1485년(성종 16)에 이르러 완비되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때 관직이나 관품을 부여할 때 발급하는 문서 작성 규칙을 ‘문무관 사품이상 고신’과 ‘문무관 오품이하 고신’으로 명명하였다.

이 가운데 문무관 사품이상에게 발급된 고신은 고려 말 이래 ‘왕지_{王旨}’라는 용어가 세종대에 이르러 ‘교지_{敎旨}’로 바뀐 정도의 변화 외에는 『경국대전』의 고신식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반면, 문무관 오품이하에게 발급된 고신은 『경국대전』에 제시된 고신식만으로는 조선 개국 이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데에 한계가 있다. 앞서 살펴본 권가후와 권징에게 발급된 조사문서가 바로 『경국대전』에 제시된 문무관 오품이하 고신이 출현하기 전까지 사용된 문서였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조사문서의 변화 과정과 별도로 『경국대전』의 문무관 오품이하 고신 양식 출현에 대해서도 당시의 상황을 보다 면밀히 따져볼 실물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확인된 고문서 사례 가운데서는 이미 1468년(세조 14) 정옥견에게 발급된 고신에서 이미 『경국대전』의 오품이하 고신식에 가까운 형태가 보이고, 이어서 1471년(성종 2) 정옥견 고신부터는 ‘某曹某年某月某日奉教 云云’처럼 『경국대전』 고신식의 격식을 온전히 갖춘 실물 문서가 확인되고 있다.

1498년에 권갑성에게 발급된 오품이하 고신은 『경국대전』의 오품이하 고신식과 정확히 부합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1468년부터 1500년 사이에 발급된 오품이하 고신은 약 30여 점 내외로 추산된다.



[도 3] 1468년 정옥견 고신



[도 4] 1471년 정옥견 고신



[도 5] 1496년 이훈 고신



[도 6] 1498년 권갑성 고신

이 시기에 발급된 이른바 초창기 오품이하 고신은 조선 중후기의 오품이하 고신에는 보이지 않는 몇 가지 특징이 관찰된다. 문서의 전면에 해당 문서를 작성한 이조나 병조의 서리가 자신의 직함과 성(姓)을 적고 그 아래에 서명을 분명히 표기해 놓은 점이 후대의 고신과는 명확히 다르다. 권갑성의 고신에도 문서의 중간 부분 하단에 “書吏 臣 ■■”라고 적은 부분이 확인된다.

또한 고신을 발급한 연월일의 좌우측에 발급 사실과 관계된 배경이나 근거를 작은 글씨로 부기해 놓는 부분에도 이 시기 문서만의 특징이 관찰된다. 바로 특정 지명이 표기된 것이 그것이다. 권갑성의

고신에는 “安東”이라고 적혀 있고, 1479년 정옥견 고신에는 “好賢坊”, 1496년 이훈 고신에서는 “安東”이라는 표기가 기재되어 있다.

비슷한 무렵에 발급된 다른 오품이하 고신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특별히 지명을 부기해 놓은 경우는 실직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에게 품계를 올려주거나 실제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군직軍職을 부여할 때 지명을 별도로 적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직으로 재직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발급하는 고신에는 해당 문서를 수령할 인물이 살고 있는 지역명을 적어 놓음으로써 현지로 보내주라는 의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4. 맺음말

이상에서 안동권씨 부정공파 종중에서 새로 확인된 15세기 고문서 5점을 살펴보았다.

1449년(세종 31) 권징의 문과 초시 시권은 조선시대 과거제도에서 시행된 역서법에 따라 응거자가 제출한 시권을 서리가 베껴 적은 주초 朱草로 추정하였다. 이는 아직까지 실물 사례가 드문 15세기 시권이 확인된 점에서도 의미가 크고, 더불어 조선시대 과거제도의 일면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의미가 부여된다. 조선 초 과거제 시행 초기의 관시館試 관련 문서라는 점, 초시 시권의 원본이 아닌 주초가 전래된 점 등 좀 더 면밀히 살펴볼 지점도 존재한다.

권가후와 권징 부자에게 발급된 조사문서 3점은 현재까지 확인된 다른 원본 조사문서와 더불어 15세기 관직 임명문서(인사문서)의 제도

와 문서 양식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실증 자료이다. 특히 1457년(세조 3)을 기점으로 변화된 제도 변화와 공문서 작성법의 변화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끝으로 권갑성에게 발급된 고신은 조선 성종대에 최종 반포된 『경국대전』 체제가 정착되어 간 초기의 상황을 원본 문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예이다. 조선 특유의 관직 임명 문서인 오품이하 고신 제도가 확립된 초기 상황을 실물 문서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고, 조선 중후기 고신의 특성과는 다른 15세기 고신의 몇 가지를 특성을 살펴볼 수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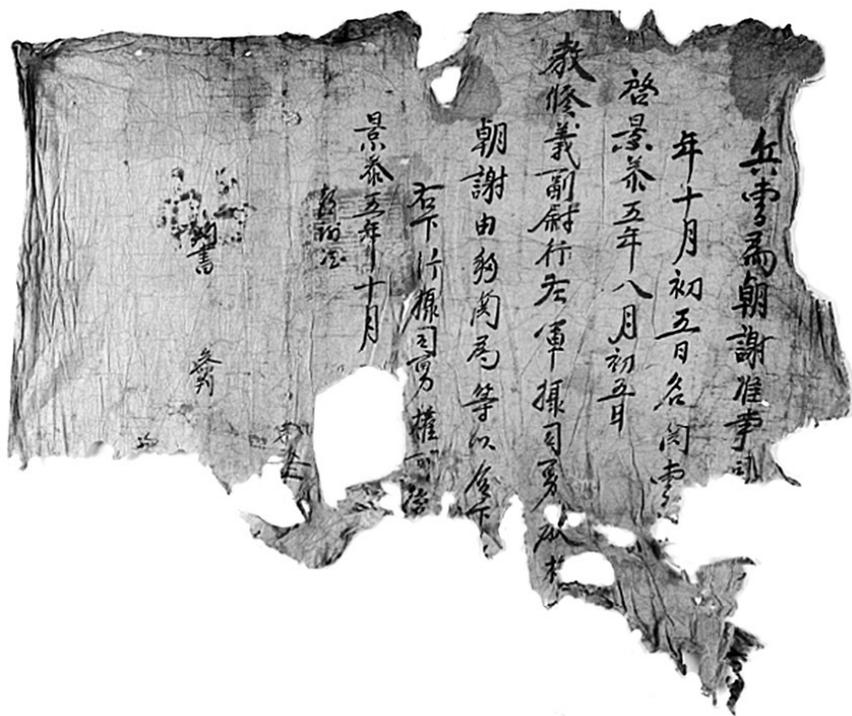
• 2022. 05. 20 : 논문투고

• 2022. 05. 26 ~ 06. 17 :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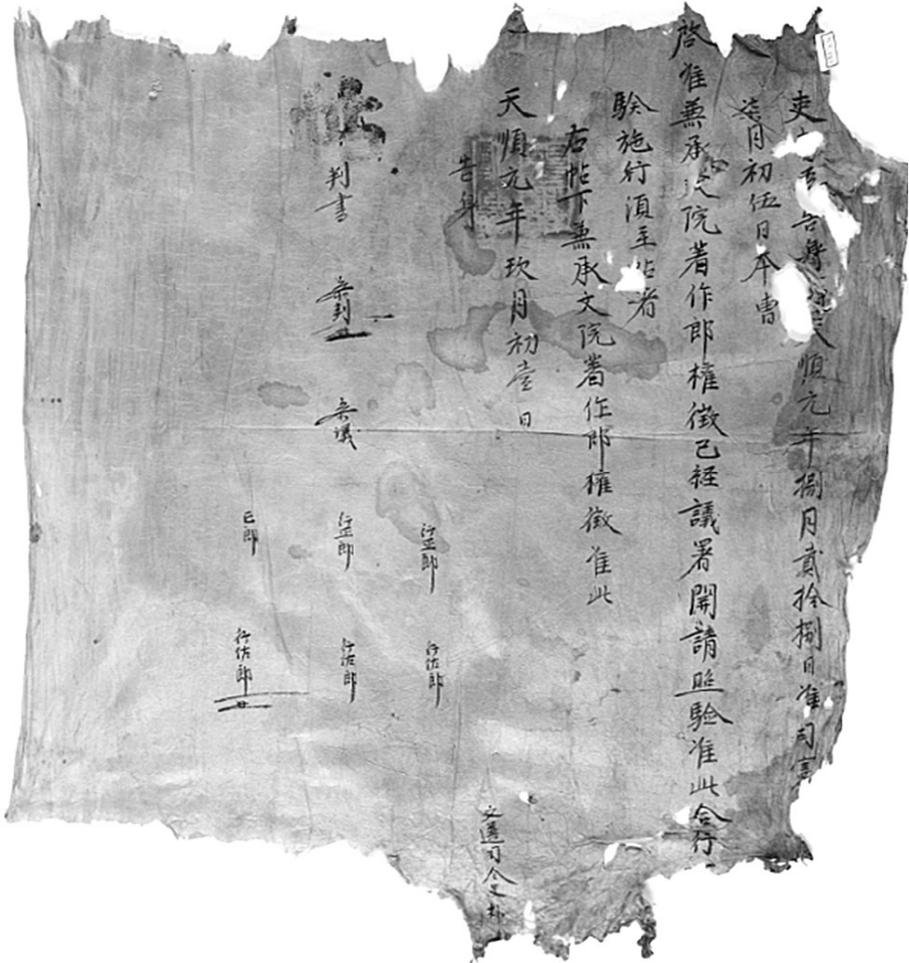
• 2022. 06. 21 :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

부록 안동권씨 부정공파 증중 고문서 도판

[부록 1] 1454년(단종 2) 권가후 조사문서



[부록 2] 1457년(세조 3) 권징 조사문서(1)



[부록 4] 1498년(연산군 4) 권감성 고신



참고문헌

『經國大典』

『安東權氏族譜』(成化譜), 1476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貴929.1-Se61a-v.1-3).

『安東權氏副正公派世譜』, 1861년, 국립중앙도서관(古2518-07-69).

『興海裴氏族譜』, 裴相勛等編, 1868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K2-1818).

『藤巖先生逸稿』, 1828년, 안동권씨 부정공파 종중.

권유정, 「조선시대 추증 제도와 문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
논문, 2019.

김동석, 『朝鮮時代 試券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3.

_____, 「과거 관련 장전장후 고문서 연구」, 『대동한문학』 40, 대동한문
학회, 2014.

_____, 『조선시대 선비의 과거와 시권』,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1.

김형수, 「고려후기 이자수 관직임용자료 4건」, 『국학연구』 12, 한국국학
진흥원, 2008.

남권희, 『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박병호, 『한국법제사』, 민속원, 2012.

박성중, 「조사의 사용 의미와 문서식」, 『고문서연구』 42, 한국고문서학회,
2013.

박성호, 『고려말 조선초 왕명문서 연구』, 한국학술정보, 2017.

_____, 「새로 발견된 김한계, 배임 조사문서와 조선초기 오편이하 고신의
변천」, 『국학연구』, 한국국학진흥원, 2017.

박재우, 「15세기 인사문서의 양식 변화와 성격」, 『역사와 현실』 59, 한국
역사연구회, 2006.

_____, 「고려후기 인사행정과 인사문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
사연구』 162, 한국사연구회, 2013.

박준호, 「고려후기와 조선초기의 인사 문서 연구」, 『고문서연구』 31, 한국

- 고문서학회, 2007.
- _____, 『예의 패턴 — 조선시대 문서행정의 역사』, 소와당, 2009.
- 박현순, 「조선후기 試券에 대한 고찰」, 『고문서연구』 41, 한국고문서학회, 2012.
- 矢木毅, 『高麗官僚制度研究』, 京都大学学術出版会, 2008.
- 심영환, 「朝鮮時代 草書告身 研究」, 『고문서연구』 24, 한국고문서학회, 2004.
- _____, 「조선초 吉再의 추증과 「追贈牒」의 復元」, 『포은학연구』 7, 포은학회, 2011.
- 심영환·박성호·노인환, 『변화와 정착 여말선초의 조사문서』, 민속원, 2011.
-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관련 教旨의 문서형식」, 『고문서연구』 30, 2007.
- 정구복 등, 『조선전기고문서집성』,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7.
- 川西裕也, 「朝鮮初期における官教文書様式の変遷 — 頭辞と印章を中心として」, 『朝鮮学報』 205, 조선학회, 2007.
- _____, 「『이재난고』 신축일력 소재 여말선초 고문서에 대하여」, 『고문서연구』 36, 한국고문서학회, 2010.
- _____, 「高麗事元期から朝鮮初期における任命文書体系の再検討」, 『朝鮮学報』 220, 조선학회, 2011.
-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 한국고문서자료관(<http://archive.kostma.net>).

Abstract

A Study on Ancient Documents of the 15th Century Handed Down in Andong Kwon Bujeonggong Clan

Park, Sung-ho

Associate Professor,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mong the ancient documents handed down in Andong Kwon Bujeonggong Clan, there were several original pieces of ancient documents written in the 15th century. In the results of active data collecting activities by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about 600 pieces of old books, ancient documents, and woodblocks of Andong Kwon Bujeonggong Clan were identified. Among them, I discovered five ancient documents of the 15th century that were not introduced to the academia.

The ancient documents of the 15th century that were identified this time included a piece of an answer paper of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by Kwon Jing in 1449, a piece of Josa documents issued to Kwon Gahu in 1454, two pieces of Josa documents issued to Kwon Jing in 1457, and a piece of certificate of appointment issued to Kwon Gapseong in 1498.

This thesis conducted the basic analysis on those ancient documents and then examined their significance in the area of diplomatics. In summary, the answer paper in 1449 was estimated as a Jucho a clerk

copied based on the answer paper submitted to the first stage of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by Kwon Jing. Also, the three Josa documents issued to Kwon Gahu and Kwon Jing have not only high scarcity value of data, but also have a very important meaning for examining the change process of document form and document system of the 15th century together with other original Josa documents identified so far. The certificate of appointment issued to Kwon Gapseong is a case of showing the early document system in which the 『National Code』 system was settled down after the foundation of the Joseon Dynasty.

Key words

: the early Joseon Dynasty, an answer paper of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試券), Josa document (朝謝文書), an appointment of low-level officials (五品以下告身), Kwon Gahu (權可後), Kwon Jing (權徵), Kwon Gapseong (權甲成)

